

서울특별시 강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1-24
----------	---------

제출연월일 : 2021년 3월 일
제 출 자 : 강서구청장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20년 12월 8일자로 지역체육진흥협회의 두는 근거 법률인 「국민체육진흥법」이 지역체육진흥협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개정되고, 협의회 구성 인원 등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개정되어 동법이 ‘21년 6월 9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사전에 관련 조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하여 조례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3. 주요내용

- 가. 협의회 구성을 ‘구청장과 강서구체육회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조문에 맞게 개정(제3조 제1항)
- 나. 부의장은 ‘교육청장 또는 학교장으로 한다.’를 ‘위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는 위원이 된다.’로 개정(제3조 제2항)

다. 담당국장이 당연직 위원이 되도록 신설(제3조 제4항)

라. 간사는 ‘행정관리국장’에서 ‘구 체육업무 부서장’으로, 서기를 ‘담당
과장’에서 ‘업무담당 주사’로 개정(제7조 제2항)

마. 그 밖에 어법에 맞게 용어를 순화 및 문구 변경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1항, 제2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1. 2. 3. ~ 2. 23.) : 의견 없음

2) 감사담당관 : 부패영향평가(원안동의)

3) 기획예산과 : 규제심사(해당 없음)

4) 가족정책과 : 성별영향평가(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라”로,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를 “체육진흥협의회”로,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제2조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청장 또는 학교장으로 한다”를 “위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는 위원이 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및 지역사회 체육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을 “체육발전을 위해”로, “기업체, 기타 단체의 대표자”를 “기업체의 장, 학교체육 관계자, 그 밖에 단체의 대표자와 지역사회 체육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자”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협의회는 구청장, 강서구체육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구청 소관업무의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4조제2항 중 “잔임기간”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구 체육업무 부서장”으로, “담당과장이”를 “업무담당 주사가”로 한다.

제8조 중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을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로, “지급할수”를 “지급할 수”로 한다.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국민체육진흥법</u>」 제5조제2항의 <u>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설치되는 <u>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u>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2조(기능) <u>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u></p> <p>1. 2. (생략)</p> <p>3. <u>기타</u>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p> <p>제3조(구성) ①<u>협의회는 의장, 부의장을 포함한 위원 15인이내로 구성한다.</u></p> <p>②<u>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교육청장 또는 학교장으로 한다.</u></p> <p>③<u>위원은 강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및 지역사회 체육진흥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관내 공공기관의 장, 기업체, 기타 단체</u></p>	<p>제1조(목적) ----- 「<u>국민체육진흥법</u>」 제5조제2항에 따라 ----- ----- <u>체육진흥협의회</u> ----- ----- <u>필요</u>----- -----.</p> <p>제2조(기능) <u>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u></p> <p>1. 2. (현행과 같음)</p> <p>3. <u>그 밖에</u> ----- -----</p> <p>제3조(구성) ①<u>협의회는 구청장, 강서구체육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p> <p>②----- ----- <u>위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는 위원이 된다.</u></p> <p>③----- <u>체육발전을 위해</u> ----- ----- ----- <u>기업체의 장, 학교</u></p>

의 대표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신 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생략)

②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간사와 서기) ① (생략)

②간사는 행정관리국장이 되며, 서기는 담당과장이 된다.

③ (생략)

제8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체육 관계자, 그 밖에 단체의 대표자와 지역사회 체육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자 -----

---.

④구청 소관업무의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 임기의 남은 기간-----
-----.

제7조(간사와 서기) ① (현행과 같음)

②----- 구 체육업무 부서장-----
----- 업무담당 주사가 -----
-----.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수당과 여비) -----
-----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 지급할 수 ---.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의안의 내용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생략하고자 함

4. 작 성 자

- 행정관리국 문화체육과(담당자: 임기제 행정8급 김경환 2600-6410)

규제 사전심사 검토의견서

□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강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 법령개정에 따라 지자체에서 필수적으로 조례 제·개정이 필요함
 - 종전 규정에서 지자체에 임의적으로 두도록 정하고 있던 지역체육진흥협의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개정하면서 협의회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
 - 현행 조례가 있는 지자체의 경우에도 위원의 수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체육회의 회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가 되도록 관련 조문 개정 필요

□ 주요내용

- 강서구 체육진흥협의회 위원에 구청장과 강서구체육회장을 포함하고 구성인원을 조정 함(7명 이상 15명 이하)(안 제3조)
- 당연직 위원(소관업무 담당국장) 신설(안 제3조)
- 간사 및 서기의 직책 변경(안 제7조)

□ 검토의견

- 동 개정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의 개정에 따라 지역체육진흥협의회의 구성에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평가번호	2021 - 2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평가담당부서	감사담당관	직 급	행정7급	성 명	이경민
입안주무부서	문화체육과	통보(조치)일		2021. 2. 16.	
관련조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개정안 전부		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1A서울강서002		
정책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부서명	문화체육과	
	담당자명	김경환	전화번호 02-2600-6410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1년 2월 3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문화체육과)	「서울특별시 강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체육진흥협의회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구민 건강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 입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개선사항 없음 <input type="checkbox"/> 자체개선안 동의 <input type="checkbox"/> 개선의견		
	'서울특별시 강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1년 02월 15일 서울특별시강서구생활복지국장 (담당자/연락번호 : 최은영/02-2600-6762) 문화체육과장 귀하			

□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지역체육진흥협의회)

①지방자치단체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 12. 8.>

②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체육회의 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밖에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 12. 8.>